

식품 영업 신고서

※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,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즉시
신고인	성명(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	주민(법인)등록번호	
	주소(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전화번호	
신고사항	명칭(상호)		전화번호
	[] 즉석판매제조 · 가공업 []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[] 일반음식점영업 [] 식품운반업 [] 기타식품판매업 [] 위탁급식영업 영업의 [] 식품소분업 [] 식품냉동 · 냉장업 [] 제과점영업 종류 [] 식용얼음판매업 [] 용기 · 포장지제조업 [] 식품자동판매기영업 [] 용기류제조업 [] 유통전문판매업 [] 휴게음식점영업		
	영업장의 면적: 건물 내부 장소 [㎡] 건물 외부 장소 [㎡] 영업장의 소재지: ※ 건물 외부 장소의 면적은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 21 조제 8 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, 같은 호 나목 의 일반음식점영업 또 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적습니다. ※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,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면적을 해당 음 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와 함께 건물 내부 장소에 적고, 해당 영업 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.		
	식품용수의 종류 [] 수돗물 [] 먹는샘물 [] 먹는염지하수 [] 지하수(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) [] 먹는해양심층수 [] 그 밖의 먹는물 * 식품용수를 2 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.		
	공유주방의 사용 여부 [] 해당 [] 미해당		
	공동조리장 이용 여부 [] 해당 [] 미해당		
	공동조리장을 함께 이용하는 영업장의 업소명, 영업의 종류 및 소재지:		
	식품자동판매기의 자동적인 혼합 · 처리 기능 여부 [] 해당 [] 미해당		
	반려동물(개, 고양이로 한정한다) 출입 여부 [] 해당 [] 미해당		
	「식품위생법」 제 37 조제 4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 조제 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		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	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 36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. *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			
신 고 안 내			
<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> 1. 즉석판매제조 · 가공업 2. 식품소분업 3. 식품소분업 4. 식용얼음판매업 5.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. 유통전문판매업 7.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. 기타식품판매업 9. 식품냉동 · 냉장업 10. 용기 · 포장류제조업(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 · 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) 11. 용기류제조업 12. 휴게음식점영업 13. 일반음 식점영업 14. 위탁급식영업 15. 제과점영업			
유 의 사 항			
1.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2.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「식품위생법」 제 97 조제 1 호에 따라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게 됩니다. 3.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 42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 니다.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하수도법」, 「농지법」, 「학교보건법」,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, 「하천법」, 「한 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물환경보전법」, 「소음 · 진 동관리법」, 「관광진흥법」, 「학원의 설립 ·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」, 「청소년 보호법」, 「근로기준법」, 「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주차장법」, 「지방세법」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4.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4 제 8 호가목 2)라)에 따라 공동조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리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			

제출서류	1. 교육이수증 1 부(「식품위생법」 제 41 조제 2 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제조·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1 부(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 21 조제 2 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) 3. 시설사용계약서 1 부(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「먹는물관리법」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(시험)성적서 1 부(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·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5.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 부(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 21 조제 8 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,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6.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 부(2 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7.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 부(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 21 조제 8 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8. 「국유재산법 시행규칙」 제 14 조제 3 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 부(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 21 조제 2 호의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의 영업, 같은 조 제 5 호의 식품소분·판매업의 영업, 같은 조 제 8 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,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9.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 부(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 21 조제 2 호의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의 영업, 같은 조 제 5 호의 식품소분·판매업의 영업, 같은 조 제 8 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,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0.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 부(군사시설에서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 21 조제 8 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1.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 21 조제 8 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, 같 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, 같 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2.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5 의 2 에 따른 서류 1 부[음식판매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 1 호·제 2 호 및 비고 제 1 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·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 은 표 제 2 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)를 사용하여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 21 조제 8 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, 같 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 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] 13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 12 조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7 조제 4 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 12 조제 2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8 조제 5 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 (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 21 조제 8 호가목, 나목,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4. 공유주방 소재지,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(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 21 조제 9 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할 경우만 해당합니다) 15.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 22 조제 5 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(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영 제 21 조제 8 호가목, 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		
	구분	전자민원	방문·우편민원	
		8,300 원	9,300 원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토지이용계획확인서(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 42 조제 1 항제 10 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) 2. 건축물대장 또는 「건축법」 제 22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(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 42 조제 1 항제 10 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) 3.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(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 21 조제 8 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, 같 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 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 44 조제 2 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자동차등록증(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 21 조제 8 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, 같 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 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5. 사업자등록증(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「고등교육법」 제 2 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 21 조제 8 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, 같 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 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6. 건강진단결과서(제 49 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7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 9 조제 5 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 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 2 조제 1 호가 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그 밖의 영업신고	25,200 원	28,000 원
	처리절차			

필요시 시설조사

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신고증 발급 →

(15 일 이내)

신고인 처리기관 :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)